

대구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1나26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1나2668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가단2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홍욱, 김진원

변론종결 2022. 11. 9.

판결선고 2023. 2. 17.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가단20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경북 D 답 1,623㎡에 관하여 2020.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C에게 위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9. 29. 접수

제162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2014. 4. 25. 원고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 차량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던 지입차주이며, 피고는 C의 형이다.

나. 원고는 2016. 11. 8.경, C이 위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위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35703호로 C에 대하여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 및 체납된 관리비 등 합계 16,0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5.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은 2020. 9. 2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경북 D 답 1,6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2020.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의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이켜보건대, C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과 채무자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에 2020. 9.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K생)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9. 29. 접수 제162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C은 자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5,000만 원이지만, 피고는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C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채무 2,500만 원과 J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② 위 J에 대한 채무변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은 2,500만 원 미만이므로, 매매대금 전액을 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채무자가 변제 또는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하여 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였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호증, 을 제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조합 낙동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가 변제 또는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우선 J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 C와 일반채권자 J 사이에 2019. 4. 8. 대여원금 5,0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같은 날 J이 C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20. 12. 2. 피고가 J에게 금액 5,000만 원으로 된 자기앞수표(M조합 수표번호 N)를 지급하였고, 같은 날 J이 채무변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위 자기앞수표가 2020. 12. 3. J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2021. 1. 8. 위 J 명의 농협계좌에서 금액 5,000만 원으로 된 자기앞수표(수표번호 O)가 발행되었고, 이는 2021. 1. 12. 피고에게 지급되었으며, 피고는 이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는 J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1달 후 다시 돌려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J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는 위 O 자기앞수표는 J과 피고 사이에 약정한 부동산취득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 전인 2020. 9. 15.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C의 일반채권자인 주식회사 I에 대한 2,5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변제를 위한 것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2,500만 원 미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주변 토지 거래금액 등)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500만 원 미만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5,000만 원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시가 2,500만 원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2배에 달하는 금액인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보다도 훨씬 다액인 8,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는 점, 피고는 C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 외에 별도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500만 원을 더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2,5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주장에 의하면 애착을 가졌던 이 사건 부동산이 동생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경매로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통하여 보면 피고는 동생인 C의 무자력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하여 동생의 유일한 재산이 현금화 되는 것을 인식한 것이므로, 설령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형제간의 깊은 '우의'(友誼)로 불지언정 이를 법률상 '선의'(善意)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천, 판사 유진홍, 판사 안정현